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특례 마련 등〉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06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개관	4
나.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검토	8
2. 조문별 검토	13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정의규정 등	13
나. 기업승계 촉진 체계의 구축	21
다.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 원활화에 관한 특례	30
라. 승계 후 고용유지를 위한 경영지원	60
마. 보칙 및 부칙	69
※ 참고자료	7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3
3. 회부연월일 : 2026.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로 99.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중소기업 비중이 약 3,309조 원으로 4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 수 기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보여주며, 고용·매출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함.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사망 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등으로 흑자도산이나 기업 매각이 발생하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에 미치지 못하고, 승계 실패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대규모

일자리 상실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토대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전 세계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감면과 산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 존속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승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승계지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지원 기관으로부터 승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정보 제공, 자문, 용자·보증 연계 등을 지원하고, 승계 후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를 비롯하여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소재불명 주식 처리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을 원활히 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사.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고용안정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세제, 인력, 판로, 능력개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 특례 및 규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사망 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배구조 불안정, 흑자도산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피승계자, 승계자, 기업승계 등에 대한 정의, 승계 지원기관의 지정, 승계지원 등록제 운영, 용자·보증 지원, 소규모 분할·합병, 간이합병, 영업양수도,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등 「상법」에 따른 절차에 관한 특례 및 승계 후 경영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총 7장 33개의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장은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승계 지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3장은 중소기업 승계지원 신청 및 등록, 등록 취소 등 중소기업 승계지원 등록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장은 승계 지원기관 이용지원, 융자 지원, 보증 및 보증연장 지원 등을 규정하고,

제5장은 소규모 분할·합병, 간이합병, 영업양수도,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소집의 통지 등 「상법」에 따른 일반규정에 대한 특례 및 소재불명 주식 취득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며,

제6장은 세제·인력·판로 지원, 교육공무원의 휴직·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및 규제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장 보칙은 보고 및 검사,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칙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장	조	조 제목
제1장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제6조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의 운영
제3장	제8조	중소기업 승계지원 신청 및 등록
	제9조	기업승계 지원의 등록 취소
제4장	제10조	중소기업 승계 지원
	제11조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 이용 지원
	제12조	융자 지원
	제13조	보증 지원
	제14조	보증 연장 지원
	제15조	승계 후 사업재편 지원
제5장	제16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7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21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2조	소재불명 주식 취득 특례
	제23조	중소기업 승계 영업양도 특례
	제2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제6장	제25조	세제 지원
	제26조	인력 지원 및 특례
	제27조	판로 지원 및 특례
	제28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제29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제30조	규제의 신속 처리
제7장	제31조	보고 및 검사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 칙	-	시행일

나.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검토

최근(2012~2023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CEO 중 60세 이상 비중은 22.7%p 증가(14.1%→36.8%)하여 전체인구 중 60세 이상 비중 증가폭 10.7%p(16.5%→27.2%)의 2배가 넘는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임.

60세 이상 인구비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2013~202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활용·가공

또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조 중소기업 수를 CEO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증가하여 뚜렷한 중소기업 고령화 경향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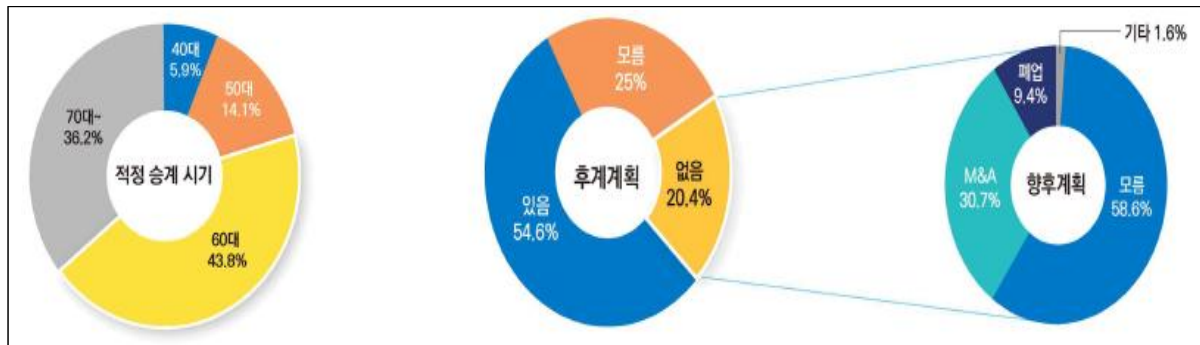
제조 중소기업 CEO 연령대별 증가율(연평균, %)

전체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 미상
1.6	-0.9	-1.7	-3.0	-1.1	11.2	-14.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2020~2024) 자료 활용·가공

CEO 설문에 따르면 후계계획에 대해 ‘모름’ 또는 ‘없음’의 응답비중이 45.4%를 차지했고, 후계계획이 없는 기업 중 9.4%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 인구비중(%)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2024.11.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중 5.6만개사가 후계자 부재기업으로 추정되고 이 중 46.5%인 2.6만개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해당기업이 폐업할 경우 고용충격, 지역경제 위축 등이 예상됨.

제조 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추정

지역	중소기업수(제조업)		후계 부재율	후계 부재기업	
	전체	60세 이상		기업수	지역분포
서울	84,745	26,466	36.1%	9,554	17.0%
경기	202,947	63,380	27.2%	17,239	30.6%
인천	36,533	11,409	29.2%	3,332	5.9%
충북	20,448	6,386	25.2%	1,609	2.9%
충남	26,520	8,282	25.6%	2,120	3.8%
대전	12,052	3,764	27%	1,016	1.8%
세종	2,046	639	28.3%	181	0.3%
전북	17,533	5,476	24.8%	1,358	2.4%

전남	19,273	6,019	24.4%	1,469	2.6%
광주	12,450	3,888	28.1%	1,093	1.9%
강원	11,348	3,544	24.4%	865	1.5%
대구	34,565	10,795	28%	3,023	5.4%
경북	41,034	12,815	24.1%	3,088	5.5%
경남	53,596	16,738	25.1%	4,201	7.5%
부산	40,126	12,531	27.9%	3,496	6.2%
울산	10,950	3,420	25%	855	1.5%
제주	4,200	1,312	25.1%	329	0.6%
합계	630,366	196,863	28.6%	56,303	100.0%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방안」, 2024.11. 중 후계자 부채율 추정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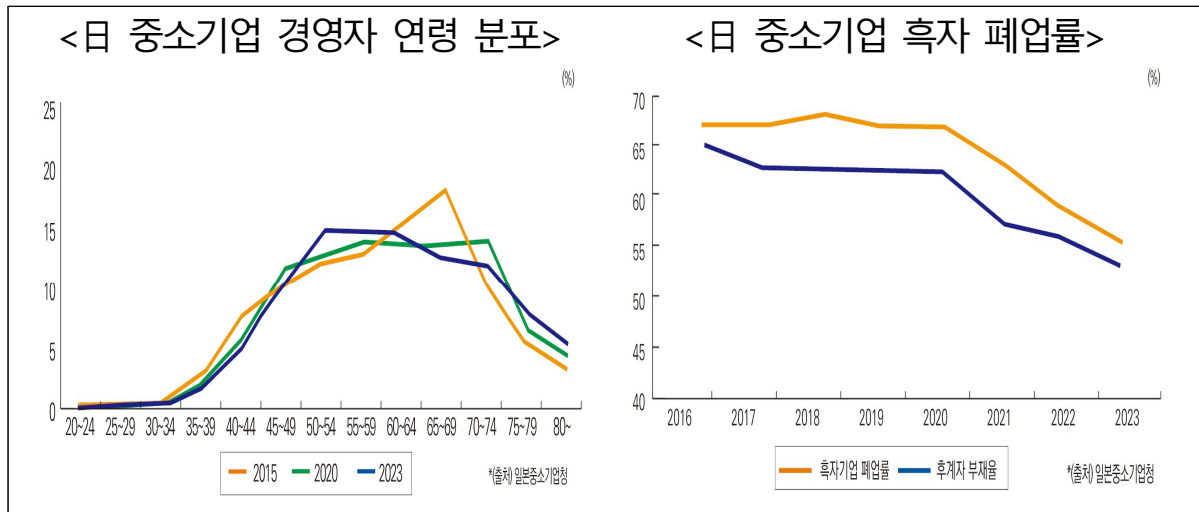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2007년 초고령 사회 진입 후 중소기업 휴폐업이 급증하자 후계부채에 대한 대안으로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하여 M&A를 통한 제3자 승계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조세특별조치법」에 기업승계에 따른 설비투자 세액공제, 투자손실준비금 적립, 등록면허세·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최근 경영자 연령대 하락, 후자 폐업률 감소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본의 기업승계 M&A 촉진정책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경영승계원활화법	• 기업승계 지원 정책 기반(금융, 보조금, 세제지원 등)
사업인계지원센터	• 지역별 컨설팅, M&A 수요 매칭 등 정책 수요 대응 거점 운영
네트워크	•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 협업 네트워크로 기업승계 수요 발굴
중개기관 등록제	• 민간 중개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2025.12.

일본 기업승계 촉진정책 성과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방안」, 2024.11.

이에 제정안은 일본처럼 국가차원의 기업승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승계지원 관련 통합적 법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승계지원 등록제의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자문, 용자·보증 연계, 「상법」에 따른 합병절차에 관한 특례, 승계 후 고용안정 및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라 기업승계에 특화된 법률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초고령 사회¹⁾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후계 부재로 인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지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진입함.

다만, 제정안은 자녀부재, 당사자 기피 등으로 필연적 한계가 발생 하는 기존 친족승계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승계방식을 “증여”로 한정하고 중점을 두면서,

이차적으로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승인될 경우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제공, 경영·기술·회계 자문, 용자·보증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승계지원 등록제).

또한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을 하게 될 경우 상법상 각종 합병절차 특례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승계완료후 사업재편 및 특례).

그러나 기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감안할때 친족 증여라는 승계방식 외에 제3자 승계 및 인수합병 등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무상으로 기업을 증여받은 자에게 분할·합병·영업양도 등 사업재편 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업종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³⁾.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한편,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승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민법」 상 유류분 적용 특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5호)이 발의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과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2건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점을 법안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승계촉진을 위한 법률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증여로 한정된 승계방식 등에 대하여 유사취지 법안(의안번호 2215079·2218669)과의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효과적 입법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익의원 대표발의, 제2215079호), 「기업경영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제2218669호)

2. 조문별 검토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정의규정 등(안 제1조~제5조)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피승계자”란 60세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의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중소기업을 경영한 자로서 그 소유 지분 전부를 친족 또는 제3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승계자”란 제2호에 따른 피승계자로부터 기업승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법인, 조합 또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기업승계”란 승계자가 피승계자로부터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자산을 증여받고 해당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정기관을 말한다.
6. “승계지원 신청”이란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에 기업승계와 관련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7. “승계지원 등록기업”이란 제8조에 따라 기업승계 지원신청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승계 지원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경영자 고령화 심화 속 기업승계 곤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중소기업”, “피승계자”, “승계자”, “기업승계”, “기업승계자” 등 용어의 뜻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피승계자”를 60세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의 지분을 50% 넘게 소유하고 10년 이상 경영한 자로서 소유지분 전부를 친족 또는 제3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기업승계”의 개념을 피승계자로부터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자산을 증여받고 해당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증여는 「민법」 5)에 따른 무상계약이므로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방식으로 승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6)에 따른 가업상속

5)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7)에 따른 증여세 특례는 피승계자 지분이 40%(상장사 20%) 초과시 세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정안은 피승계자 지분을 50% 초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수정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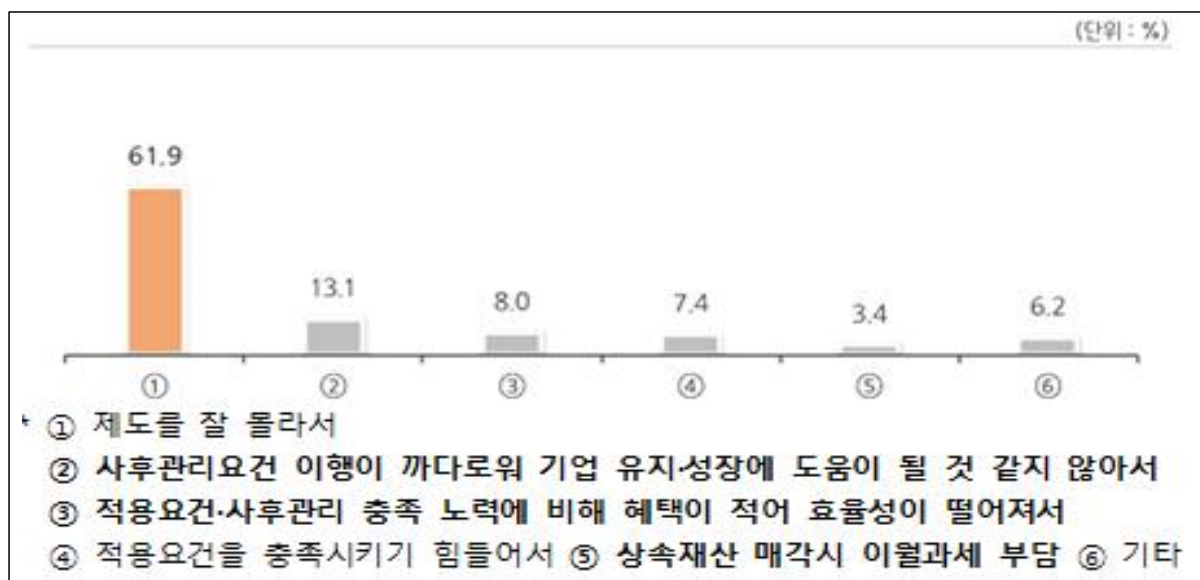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2022. 12. 31.>

-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는 승계자(친족 vs. 친족外), 방식(상속·증여 vs. M&A)에 따라 정책수요가 다양하고 자녀 등 후계자 부재 또는 당사자 승계기피 등으로 인한 상속·증여 중심 친족승계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업 인수·합병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승계유형을 포괄하는 정의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가업승계는 ①사전적 요건(18세이상, 상속·증여 2년전부터 기업에 종사)과 ②사후적 요건(지분 및 자산 유지의무,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 유지의무, 업종변경 금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세제상 특례가 유지되기 때문에 후계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거나 고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할 의향이 없거나 고민되는 이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025.5.

2)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3조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책 추진이 필요하므로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기업승계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협력과 기업승계 활성화 시책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책무부과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제정안에 따라 기업승계자에게 부여되는 자금지원, 합병절차상 특례 등을 고려할 때 국가시책 협조, 승계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등 기업승계자의 기본적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겠음.

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운영 주체에 대한 책무와 함께 정책대상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소상공인기본법」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⁹⁾,

8)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¹⁰⁾ 등이 있음.

3)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및 제5조)

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10년 이상 경영활동을 유지한 기업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기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4조는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국내기업 중 대표자가 10년 이상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석유화학사업자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들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유지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¹¹⁾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¹²⁾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신청 기업등을 제정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¹³⁾.

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3) 유사 입법례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있음.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¹⁴⁾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상법」이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소규모분할·합병, 영업양수도, 합병절차 등 일반 규정에 대한 제정안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일반주주로 구성된 주권상장법인에 있어 소수 경영진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다수의 분산된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동 제정안의 취지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관련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정안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기업승계 촉진 체계의 구축(안 제6조 ~ 제14조)

1)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의 운영 등(안 제6조 및 제7조)

제 정 안
제6조(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국내 중소기업 승계 실태 및 현황 파악 2.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에 관한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3.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4.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5.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사업재편 촉진 및 경영성과 제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 정책의 효과 분석 8. 해외 각국의 승계 지원 현황 및 성과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로 중소기업 승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 기업승계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기업승계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중

제 정 안

소기업의 기업승계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승계 후 사업재편을 통한 경영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승계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중소기업 승계지원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3. 중소기업 승계에 필요한 컨설팅 및 기업 진단
4. 중소기업 승계에 따른 용자 및 보증 연계
5. 중소기업 승계 후 사업 재편을 통한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
6. 중소기업 승계 후 사후관리 및 감독을 위한 사항
7. 중소기업 승계 관련 경영후계자 교육 등 기업승계 교육
8. 기업승계에 관한 제도 및 인식 개선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①내용적으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지원사항, 성과 및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하되 ②절차적으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는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승계후 경영성과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 지정과 사무위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지원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공회의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무위임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할 경우 지정취소기준도 함께 규정하는 입법례¹⁵⁾를 고려하여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지원으로서 승계 관련 정보의 수집·제

1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희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
6.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기준과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 컨설팅 및 기업진단, 융자 및 보증연계 등은 기업승계과정에 필요한 폭넓은 정보탐색 및 분석, 법무·세무 등 자문 등을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안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사후지원으로서 사업재편을 통한 경영성과 확대, 사후관리 및 감독 등은 승계 이후 기업안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됨(안 제7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 정책수요의 다양성 및 지원기관의 탄력적 지정·운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기보다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등 운영인프라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2) 중소기업 승계지원 신청·등록 및 취소(안 제8조 및 제9조)

제 정 안
제8조(중소기업 승계지원 신청 및 등록) ①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승계에 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최근 10개년 재무제표, 최근 10개년 주주명부 등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2. 기업 지분 및 자산 이전 방법 3. 기업승계에 따른 고용·기술·거래처 승계 방안 4. 기업승계 후 사업 재편을 통한 경영성과 확대 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정 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승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은 승계지원 등록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지원기관에서 승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완료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업승계 지원의 등록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지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지원 등록을 받은 경우
2. 승계지원 등록 완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승계에 대한 실질적 행위가 없는 경우
3. 승계를 통한 소유권 이전 후 5년 내에 승계자가 승계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승계자의 지분율이 100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승계를 통한 소유권 이전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승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7. 승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소유하는 지분의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8조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승계지원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심사·승인을 거쳐 등록기업으로서 승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정규직 근로자 감소, 총급여액 감소 등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법안에 따른 다양한 특례적용만을 위해 경영자를 교체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고용·기술·거래처 승계방안, 경영성과 확대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진성기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계속, 고용유지 등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통해 지원에 대한 효과성 담보 및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원내용과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승계희망 중소기업에 심사·등록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것과 승계완료 후에도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승계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이 기업승계를 승계자가 피승계자로부터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자산을 증여받는 것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등이 포함되는 지분·자산 이전 방법을 별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기업승계정책은 승계대상기업 뿐 아

나라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할 기업승계자에 대한 판단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승계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만으로 적격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3) 기업승계에 관한 지원(안 제10조~제14조)

제 정 안
제10조(중소기업 승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 기업에 대하여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영·기술·회계 자문, 용자·보증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 이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 등록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업승계 지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기관을 통하여 진행되는 승계 관련 자문, 가치평가,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자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승계자가 피승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승계대상 지원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증 지원) 정부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승계자가 피승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승계대상 지원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투자, 유동화회사보증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운용하도록

제 정 안

할 수 있다.

제14조(보증 연장 지원) ① 정부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이 기존에 이행한 보증에 대하여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에 따른 대표자 변경 및 최대주주 소유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경영·기술·회계 자문, 융자·보증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지원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자문, 가치평가, 중개수수료 등 비용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12조는 피승계자 외의 자로부터의 주식인수자금 확보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의 근거를 규정하고, 제13조는 피승계자 외의 자로부터의 주식인수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투자·유동화회사보증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제정안이 기업승계를 무상이전인 증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승계과정 자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현실적 필요성이 높

지 않고 피승계자 외의 자로부터의 주식취득은 제정안의 기업승계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입장임.

안 제14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보증관계가 최대주주 변경 등에 따라 종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업승계를 완료한 승계기업은 시설개선, 기술개발, 조직통합 등을 위한 자금수요가 있을 수 있고 특히 AI 등 딥테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위험(R&D risk), 시장-제품 위험(market-product risk)이 높은 고위험·고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자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고 후속투자, 규제완화 등 재정적·제도적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승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지속될 경우 승계이후 기업안정화, 지속성장 및 시너지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 원활화에 관한 특례(안 제15조 ~ 제24조)

1) 승계 후 사업재편 지원(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승계 후 사업재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 시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 원활화에 관한 특례 적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5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원활화에 관한 제정안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특례규정인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이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기업을 승계한 기업의 승계 후 경영성과 증대를 위한 사업재편 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2) 소규모 분할·합병 등에 대한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제 정 안
제16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해당 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 중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합

제 정 안

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 중에만 적용한다.

안 제16조는 기업승계에 따른 물적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의 총자산액이 승계지원 등록기업 총자산액의 10% 미만인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법」 제434조 및 제530조의3에 따라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나,

제정안은 이와 같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물적분할 시 주주총회 생략요건이 확대되어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은 분할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생략할 경우 분할반대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제정안 취지와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 제17조는 기업승계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추진할 경우 「상법」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및 소규모 합병 요건을 존속회사 발행신주 비율의 10%에서 20%(지분희석률 9.09%→ 16.67%)¹⁶⁾로 완화하면서 반대주주의 지분요건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있음.

「상법」 제360조의3, 제434조 및 제522조제1항에 따라 회사가 주식교환 또는 합병할 때에는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나 발행신주 비율이 낮아 지분희석률이 미미한 경우(발행신주 비율 10% 이하, 지분희석률 9.09% 이하)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반대할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합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60조의10제1항 및 제527조의3제1항).

16) 지분희석률 = $1 - \frac{1}{1 + \text{발행비율}}$

지분희석률 공식 자체에 관한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법」이 정한 주식수 구조에서 수학적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계산식임(예시: 발행주식수가 100주에서 110주로 증가하면 기존주주의 희석률은 9.09%가 됨)

제정안은 이와 같은 소규모 주식교환·합병 요건 즉, 발행신주 비율과 반대주주 지분요건을 동시에 완화함으로써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소규모 M&A 활성화 및 합병반대 주주 보호장치 보완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상법」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합병은 주주의 지분희석이 미미한 경우(지분희석률 9.09%까지 허용) 신속한 기업결합을 위해 적용되는 예외적 규정이라는 점, 소규모 주식교환·합병에 따라 주주총회를 생략할 경우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무력화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보호가 약화된다는 점 등을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제정안 취지와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u>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② 삭제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④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⑥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동항제3호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 “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⑦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

「상법」

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 중에만 적용한다.

안 제18조는 기업승계에 따라 간이주식교환·간이영업양수도·간이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분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90%이상에서 3분의2 (66.7%)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음.

「상법」에 따라 주식교환·영업양수도·합병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완전모회사·상대회사·존속회사가 될 회사가 완전자회사·상대회사·소멸회사가 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주식교환·간이영업양수도·간이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2제1항).

제정안에 따르면 간이주식교환·간이영업양수도·간이합병 시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지분요건이 완화되어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한 경영성과 확대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주식교환·영업양수양도·합병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대한 구조변경이므로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는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간이주식교환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분요건을 완화할 경우 소액주주보호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상법」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같은 법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분할합병, 같은 법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같은 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의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제 정 안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안 제19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통지기간(주총 2주전→7일전), 서류 공시기간(주총 2주전→7일전), 주주명부폐쇄 공고기간(폐쇄일 또는 기준일 2주전→7일전)을 「상법」의 일반규정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합병등 통지 시기

구 분	「상법」	제정안
주주총회 통지	주주총회일 2주전	주주총회일 7일전
서류 공시	주주총회일 2주전	주주총회일 7일전
주주명부폐쇄 공고	폐쇄일·기준일 2주전	폐쇄일·기준일 7일전

제정안에 따라 합병절차가 간소화되어 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시간 비용(Time Cost)¹⁷⁾이 절감되고 기(既) 협상된 거래조건의 변경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거래성사율(Deal Closing)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17) 특정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비용으로서 노동 비용, 지연으로 인한 기회 손실, 생산성 저하 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함.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주주총회 통지기간 단축 등 합병절차 간소화 특례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같이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 중에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을 규정한 입법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9) 등이 있음.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1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상법」

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

「상법」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법」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併”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상법」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5) 채권자보호절차 등에 대한 특례(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안 제20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을 단축(1개월→10일)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따로 따로 최고해야 하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 이를 공고로 갈음하며,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상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 개별최고 등 엄격한 절차 준수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급보증 등 대체 보호장치를 통해 채권자 권익보호를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M&A는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를 수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회사의 중대한 변화이므로 「상법」은 피합병법인 뿐만 아니라 합병법인 채권자에게 대한 보호절차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을 뿐 채권자 보호절차까지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채권자에게 알리고 이의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은 「상법」이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²⁰⁾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²¹⁾²²⁾.

한편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에 ‘기업승계’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보완하여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0)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21) 대법원 2004.8.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판결요지]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

[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22)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익)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익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익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익을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익이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법」

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안 제21조)

제 정 안

제21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매수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인과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이견으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청구인에게 선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은 즉시 이전된 것으로 보며, 이후 법원의 결정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지급한다.

안 제21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 청구기간을 단축(20일→10일)하고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기업의 매수 의무기간을 연장(비상장: 2개월→6개월, 상장: 1개월→3개월) 하며 매수가격 이견으로 인한 선지급 또는 법원공탁 시 주식의 즉시이전 간주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를 앞당겨 M&A 절차를 촉진하고 청구권 행사 후 매수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매수청구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특징, 합병비율 산정시 정보의 비대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법」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

「상법」
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상법」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7) 소재불명 주식 취득 특례(안 제22조)

제 정 안
제22조(소재불명 주식 취득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주주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주식이 수차례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산정된 주식가격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그 주식은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주식이란 소재불명 등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이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달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안 제20조는 주주통지가 1년 이상 도달하지 아니한 소재불명 주식에 대한 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자의 법원공탁 시 주식의 즉시이전 간주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장기간 경영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승계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주주총회 개최주기가 1년이상인 경우 1회의 통지 미도달로 소재불명 간주하는 것은 주주권리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재불명 기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중소기업 승계 영업양도 특례(안 제23조)

제 정 안
제23조(중소기업 승계 영업양도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23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영업양도 시 양도가액이 양수회사 순자산액의 10% 이하인 경우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374조의2에 따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음.

「상법」 제374조에 따라 회사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영업양수의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양수절차가 간소화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영업양수·양도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대한 구조변경이므로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는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상법」 제374조의3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 90% 이상을 상대방이 소유한 경우에만 간이영업양수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대주주매수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유사 입법례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양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소수 경영진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다수의 분산된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상법」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양수계약

「상법」
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안 제24조)

제 정 안
제2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피승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투자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승계자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 제24조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피승계자 외의 자로부터 주식취득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투자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운용자산 40% 이상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하고²³⁾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업무정지 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²⁴⁾.

제정안을 통해 VC 및 벤처펀드 투자대상이 창업벤처기업이 아닌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벤처캐피탈이 초기창업기업부터 창업단계를 벗어난 중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중간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성장자금공급(브릿지 파이낸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혁신형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성

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장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벤처투자시장의 본질인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현재도 40%의 의무투자비율 충족시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²⁵⁾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10)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안 제16조~제24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특례규정은 동 제정안의 기업승계와 유사취지의 법안(의안번호 2215079·2218669)의 기업승계 정의에 관한 논의 선행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5) 현재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총자산(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총출자액)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기만 하면, 잔여 60%에 대한 투자대상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음.

라. 승계 후 고용유지를 위한 경영지원(안 제25조~제30조)

1) 세제 지원(안 제25조)

제 정 안
제25조(세제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를 위한 등록신청을 완료하여 기업승계를 추진중이거나 승계를 완료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25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승계 등록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의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근거 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개별법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만 볼 수 있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제정안의 기업승계와 유사취지의 법안(의안번호 2215079·2218669)의 기업승계 정의에 관한 논의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승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민법」

상 유류분 적용 특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5호)이 발의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중인 점을 법안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2) 인력·판로·고용안정 지원(안 제26조~제28조)

제 정 안
제26조(인력 지원 및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등록기업의 인력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 제10조 또는 제35조의5에 따른 사업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3 또는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판로 지원 및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판로지원사업을 승계지원 등록기업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승계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업승계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안 제26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인력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6)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의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27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7)에 따른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3.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판로지원사업의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보수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핵심인재 확보수단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점과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공감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기업승계 및 승계완료 기업 성장을 위한 인력지원 및 판로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AX·DX 등 최근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 고려 시 패키지 지원 등 승계기업 지원수요 다양성에 대한 효과적 충족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28조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8조에 따른

-
-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8)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조정을 위한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 재직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규정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제정안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있는 만큼 동 조항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업예방 등에 대한 노력의무는 기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 기업승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3) 교육공무원 휴직·겸임·겸직 특례(안 제29조)

제 정 안
제29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의2를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및 제16조의2 중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본다.

안 제29조는 대학교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의 벤처기업·창업기업 임직원 겸임·겸직 허용 및 벤처기업·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 허용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9)에 따른 특례규정을 승계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

원 등록기업 임직원에게도 준용하는 규정임.

다만, 중소기업부와 교육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0)

- 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 따라 대학 교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임·겸직 및 중소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이미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므로 동일 취지 특례를 신설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4) 규제의 신속처리(안 제30조)

제 정 안
제30조(규제의 신속 처리)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기업승계에 필요한 규제 및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³¹⁾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이하 “중소기업 ombudsman”이라 한다)에게 해당 활동에 대하여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정 안

-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의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기업승계 등록기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30조는 기업승계에 필요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활용하여 신속한 규제개선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1)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와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 보칙(안 제31조~제33조) 및 부칙

1) 보칙(안 제31조~제33조)

제 정 안
제31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의 확인 및 이행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제7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소기업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안 제31조는 기업승계 확인 및 이행상황 관리를 위한 해당기업의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 공무원의 검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이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요건으로 기업승계 관련 실질적 행위가 있을 것, 5년 이상 승계기업에 종사할 것,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을 유지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요건확인을 위한 사전·사후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 과정은 경영전략, 영업비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승계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안 제3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33조는 중소기업 승계지원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기업승계 지원 및 관리 업무는 다양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간이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공무 수준의 높은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2)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은 제정안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심사경과와 시행령 등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 6788-5459

참고 1

현행 가업승계 관련 지원정책 현황(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家業승계 조세지원 제도 운영(기재부, 국세청)

□ (가업상속공제) 과세대상 재산 가액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 (대상)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해당 기업을 10년이상 경영
↳ 가업기간별 공제한도 차등(【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등)

□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증여시 증여세 특례 세율(10~20%) 적용

- (대상)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해당 기업을 10년이상 경영
↳ 가업기간별 공제한도 차등(【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이면서 증여 2년 前부터 가업에 종사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등)

□ (납부 유예) 상속공제, 증여세 특례와 별도로 가업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상속세·증여세를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운영('23~)

* 동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2. 家業승계지원센터 지정·운영(중기부) ※ 중기부 예산지원('24. 7.04억원)

□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家業승계지원센터를 지정(→중기중앙회)하고, 승계 준비기업 및 승계 완료기업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08~)

* ▲세제·법률 상담, ▲승계 준비·완료 경영자 교육 및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참고 2

일본의 기업승계 정책 및 성과(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등 기업승계에 대한 정책 역량 집중



구분	지원내용	주요내용
지원 인프라	① 사업승계·인계 지원센터	· 사업승계진단 등 M&A 준비, 비용부담 완화, M&A 이후 경영통합 지원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중소기업 승계 지원 * 47개 광역자치단체에 1거점씩 설치, 중소기업에 전국본부 설치
	② M&A 지원기관 등록제도	· 중소M&A 중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21.8월 등록제 시행 * 자율규제단체로 'M&A중개협회 설립('21.10)' · M&A 중개업체의 주요 업무는 양도·양수 쌍방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칭지원 등을 수행하고, FA는 양도측 혹은 인수측 일방과의 계약에 따라 매칭 등 수행 * 일본 정부는 중소 M&A 거래업체의 중개수수료 등 보조
	③ M&A 플랫폼	· 양수·양도측의 매칭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M&A 중개 플랫폼 운영 · 매칭 기회 제공,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 M&A 관련 의식 조성
	④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기관	· 중소기업이 경영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에 대해 인증해주는 공적 지원기관 · 특례승계계획 수립시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기

구분	지원내용	주요내용
		관에 의한 지도·조언 필요 * 상공회의소 같은 중소기업지원기관 외에도 금융기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을 인증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으로 인증
금융	⑤ 일본정책금융공고법 특례 (주식매입비 등 용자 지원)	·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주식매입비용 등에 대한 용자 지원 및 특별이율 적용 * 승계한 채무의 변제자금, 주식·사업용자산 취득 자금, 상속·증여세 납부 자금 등
	⑥ 중소기업신용보험법 특례 (신용보증 확대)	· 승계 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자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신용보험법상 보통보험·무담보보험 등을 '별도의 보험'으로 설정 * 특례에 의해 신용보증협회의 채무보증도 실질적으로 별도의 보증으로 취급되어 중소기업자가 해당 채무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용이
	⑦ 중소기업 경영력 강화 지원 펀드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배경으로 사업승계, 사업재편, 재구축을 통해 경영기반 강화와 사업재건에 나서는 중소기업자에 투자
	⑧ 사업승계 시 경영자 보증 해제 지원	· 정부관계기관 무보증화 확대 · 사업승계를 위한 특별보증제도 창설 · 사업승계에 초점을 맞춘 「경영자 보증 가이드라인」의 특칙 시행 · 전문가 지원(경영자 보증 해제 및 사업승계특별보증제도 취급) · 금융기관의 경영자 보증 없는 용자 실적 등(KPI)을 공표
세제	⑨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 (설비투자 감세)	· 경영력 향상 계획에 따라 일정의 설비를 취득했을 경우, 투자액의 10%(자본금 3000만엔 초과일 경우 7%)를 세액공제 또는 전액 즉시 상각
	⑩ 중소기업 사업재편	· 사업승계 등 사전조사를 기재한 경영력 향상 계획에 따라 M&A를 실시했을 때 투자액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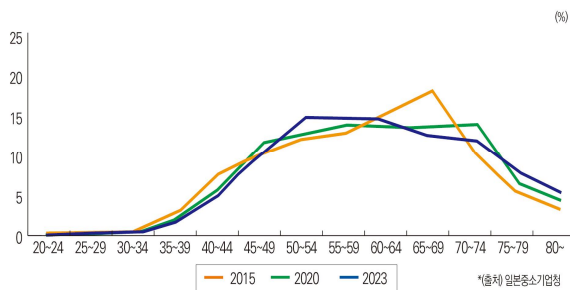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주요내용
	투자손실준비금	이하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 가능 * 적립한 금액은 손금산입
	⑪ 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 경감	· 경영력향상계획에 의거하여 , 사업 승계시 등록면허세·부동산 취득세 경감 * 등록면허세: 0.4~2.0% → 0.2~1.6% * 부동산취득세: 3.0~4.0% → 2.5~3.3%
	⑮ 소재불명주주 회사법 특례	·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전제로 소재불명 주주 로부터 주식매입 등에 요하는 기간을 단축(5→1년) 특례 부여
보조금	⑬ 사업승계·인계 보조금 (경영혁신지원)	· M&A 후 설비투자나 판로개척비용 등 보조 · 보조율 : 1/2~2/3, 한도 : 100~600만엔
	⑭ 사업승계·인계 보조금 (전문가활용)	· M&A 등록사업자를 활용한 경우 중개수수료, 기업가치평가 비용 보조 · 보조율 : 2/3, 한도 : 100~600만엔

□ CEO 연령대 하향 및 흑자 폐업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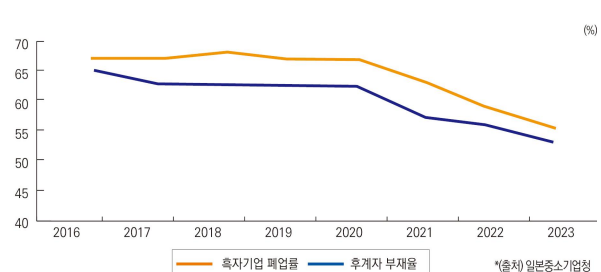
○ M&A가 활성화되면서 ^경영자 연령대 하향, ^흑자 폐업률 하향 등 기업승계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 **최다 분포 연령** ('15년) 59~65세 → ('23년) 55~59세 ** **흑자 폐업률** ('16) 64% → ('23) 52.4%

<日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 분포>



<日 중소기업 흑자 폐업률>



참고 3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개 요

-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家業승계지원센터를 지정(→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산지원('26. 7.04억원)

* ▲세제·법률 상담, ▲승계 준비·완료 경영자 교육 및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 주요 운영실적

- 승계준비 기업에 대한 컨설팅(세무, 법무 등) 프로그램 운영

<승계 컨설팅 제공 현황 (최근 5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컨설팅 건수(건)	154	146	162	171	169
자체 만족도 (점)	4.45	4.57	4.68	4.7	4.68

- 가업승계자(예정자 포함) 역량 강화 교육(차세대 CEO 스쿨 운영)

* 차세대 CEO의 경영역량 강화 및 승계전략 수립, 승계 사례 공유 등

<차세대CEO스쿨 운영실적 (최근 5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 연인원 (명)	575	836	1,173	1,031	725
자체 만족도 (점)	4.7	4.73	4.62	4.62	4.59

- 가업승계 인식개선 사업(TV 방송, 승계기업 포상, 포럼 등)
 - (TV 방송) 기업승계의 경제·사회적 가치, 국내외 우수사례 등 조명
 - (포상) 가업승계로 성장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포상(장관상 등)
 - (포럼) 1·2세대 중소기업인이 동반 참여하는 소통의 장 운영

□ 성과 및 한계

- (성과) 家業승계 정책 수요자에 대한 유일한 정책 접점으로서, 컨설팅·업계 의견수렴* 등 역할 → 제도안착(활용 증가) 기여

*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업계, 학계 참여) 운영 등으로 제도 개선 건의 등

- (한계) 친족 승계 곤란 기업에 대안(M&A 지원 등) 부재

⇒ 가업승계와 M&A 승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 확장 필요

참고 4

M&A지원센터 운영현황(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개요) M&A 수요발굴부터 자문, 중개,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M&A거래정보망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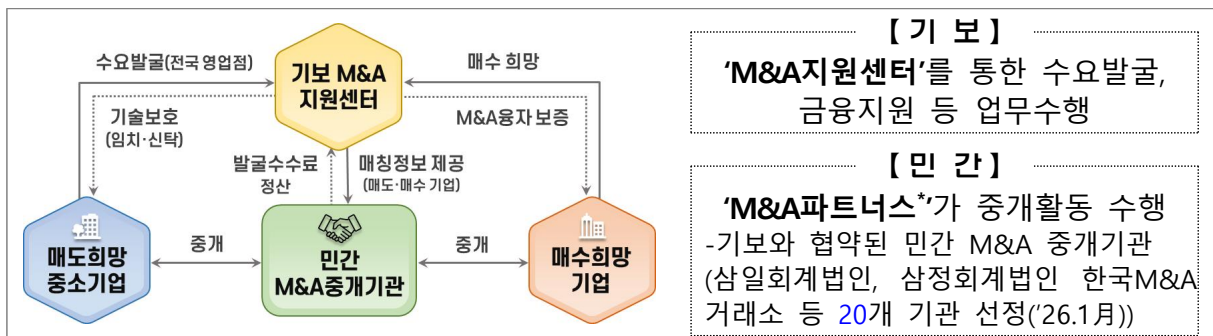
* *M&A 수요발굴, *정보제공, *중개위탁, *기술보호, *보증지원 등 업무수행

** (인프라) M&A지원센터 개소 및 M&A거래정보망 오픈('25.3~)

- (지원체계) M&A지원센터의 중개업무는 기술보증기금 등록 M&A 파트너스를 통해 민·관 협업체제로 진행

- (기보) M&A 수요기업 발굴 및 보증지원에 집중

- (민간) 수요기업에 대한 전문 중개·자문서비스 제공



□ M&A 파트너스

-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사 등 20개사 ('26. 1월말)

기술보증기금 등록 M&A 파트너스(가나다 順)				
더블유엠디(주)	(주)딥서치	모멘스투자자문	법무법인 디엘지	(주)브릿지코드
삼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주)엠엔에이코리아	(주)엠애피
인터캐피탈 파트너스(주)	(주)제타플랜 인베스트먼트	(주)피봇브릿지	회계법인 대평	회계법인 숲
회계법인 아우름	(주)클로저나인티	프렉탈 테크놀로지(주)	(주)한국법인거래소	한국M&A거래소

- (운영실적) 수요 발굴 67건, 중개위탁 64건, 보증 12건('26.1월말)